

제17기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서

주주님의 댁내 평온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상법 제363조와 정관 제23조에 의거 제17기 임시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 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당사 정관 제23조에 의거 소액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본 공고로 같음 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일 시 : 2014년 12월 26일(금) 오전 8시 30분

2.장 소 : 경기도 평택시 청북면 청북산단로 156 하이셀(주) 본관 1층

3.회의 목적사항

가. 부의안건

- 제1호 의안 : 정관일부 변경의 건 [별첨1 참조]

- 제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 제2- 1호 의안 : 사내이사 문양근 선임의 건
 - 제2- 2호 의안 : 사내이사 이용복 선임의 건
 - 제2- 3호 의안 : 사내이사 정상준 선임의 건
 - 제2- 4호 의안 : 사내이사 김태현 선임의 건
 - 제2- 5호 의안 : 사내이사 이승우 선임의 건
 - 제2- 6호 의안 : 사내이사 강윤구 선임의 건
 - 제2- 7호 의안 : 사외이사 조성규 선임의 건
 - 제2- 8호 의안 : 사외이사 이성환 선임의 건

- 제3호 의안 : 감사 선임의 건

4.경영참고사항 등의 비치

상법 제542조의 4에 의거하여 경영참고사항등을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의 전자공시시스템과 당사의 홈페이지에 공시 및 게재하였으니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5.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 직접행사시 : 주총참석장, 신분증
- 대리행사시 : 주총참석장,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

6.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증권회사에 주권을 위탁하고 계신 실질주주께서는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거나 또는 불행사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뜻을 주주총회 회일의 5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통지하셔야 합니다.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4조 제5항에 의거 한국예탁결제원이 의결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별첨3 참조] 의결권 행사 안내문 참조

2014년 12월

하이셀 주식회사
대표이사 문양근, 이용복
명의개서 대리인 하나은행증권대행부

<별첨1>

하이셀(주) 정관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	개정사유
<p>제2조(목적) 1. ~ 39 (현행과 동일) 40. 기타 위에 부대하는 사업</p>	<p>제2조(목적) <u>40. 환급창구운영사업</u> <u>41. 쇼핑몰 운영 및 시설관리</u> <u>42. 신용카드 단말기 관련업무</u> <u>43. 환전사업</u> <u>44. 자동송금처리 시스템 및 서비스제공업</u> <u>45. 결제대금예치업</u> <u>46. 세금환급 무인시스템 및 서비스제공업</u> <u>47. 내.외국인 대상 여행업</u> <u>48. 인터넷을 이용한 금융서비스 업무</u> <u>49. 기타 위에 부대하는 사업</u></p>	<p>사업목적 추가</p>
<p>제30조(의결권의 대리행사)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p>	<p>제30조(의결권의 대리행사)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 <u>및 증명서류</u>)을 제출하여야 한다.</p>	<p>증명서류</p>
<p>제31조(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과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u>4분의 1</u> 이상의 수로써 한다. 단, 이사회와 과반수 이상 동의를 거치지 않은 기존의 이사 또는 감사를 해임하는 경우와 본 조 및 본 정관의 제33조와, 제34조, 제35조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u>80%이상</u>의 찬성과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② 신설</p>	<p>제31조(주주총회의 결의방법) ①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과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u>4분의 1</u> 이상의 수로써 한다. 단, 이사회와 과반수 이상 동의를 거치지 않은 기존의 이사 또는 감사를 해임하는 경우와 본 조 및 본 정관의 제33조와, 제34조, 제35조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u>5분의4</u> 이상의 찬성과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② <u>회사는 이사회결의로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제도를 채택할 수 있다.</u></p>	<p>표현통 일, 전자투표 제도 도입</p>
<p>제44조(감사의 수) 감사는 <u>1인 이상</u>으로 한다.</p>	<p>제44조(감사의 수) 감사는 <u>1인 이상 2인 이하</u>로 한다.</p>	<p>감사의 수 제한</p>
<p>제45조(감사의 선임) ④ 신설</p>	<p>제45조(감사의 선임)④<u>이사회 과반수 이상 동의를 거치지 않은 감사의 선임은 주주총회에서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3이상 참석과 감사 선임에 표결할 수 있는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의 찬성으로 하며, 이와 같은 결의방법을 적용할 안건은 총회를 소집할 때 미리 적시 하여야 한다.</u></p>	<p>감사선임 초다수결 의제</p>
<p>(추가)</p>	<p>(부칙) 이 정관은 <u>2014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u></p>	

<별첨2>

이사선임의견

가. 이사 후보자 관련사항

구분	성명	생년월일	임기	주요약력	최대주주와의관계	추천인	비고
대표이사	문양근	68.12.27	3년	하이셀(주) 각자대표이사(현) (주)리치커뮤니케이션즈총괄대표(현) 글로벌텍스프리(주) 이사회 의장	총괄대표	이사회	재선임
대표이사	이용복	65.02.01	3년	하이셀(주) 각자대표이사(현) (주)마이크로 (주)디엠티 대표	관계없음	이사회	재선임
사내이사	정상준	68.09.10	3년	하이셀(주) 총괄부사장(현) (주)팍스넷 사업팀장 에드벤처 AE담당 농심기획 AE담당	관계없음	이사회	재선임
사내이사	김태현	69.05.30	3년	하이셀(주) TSM사업본부장(현) (주)디엠티 전무	관계없음	이사회	재선임
사내이사	이승우	75.02.07	3년	하이셀(주) 경영기획실장 (현) 파미셀(주) 대외협력실 이사	관계없음	이사회	신규선임
사내이사	강윤구	68.03.24	3년	하이셀(주) 재무이사(현) (주)아이비스코리아	관계없음	이사회	신규선임
사외이사	조성규	67.04.07	3년	법무법인 선유 대표변호사(현) 서울중앙지점 검사 역임 사법연수원 30기 제40회 사법시험 합격	관계없음	이사회	재선임
사외이사	이성환	73.05.21	3년	법무법인 세한 변호사(현) 금융감독원 변호사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관계없음	이사회	재선임

감사선임의견

가. 감사 후보자 관련사항

구분	성명	생년월일	임기	주요약력	최대주주와의관계	추천인	비고
감사	정재윤	1967.02.16	3년	세무법인 신원 대표세무사(현) 국세청 사무관 한국세무사회 연구위원 MBN방송 세무상담역	관계없음	이사회	재선임

실질주주의 의결권행사 안내문

실질주주의 의결권행사 방법 안내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의결권은 주주총회에서 주주님의 의견을 반영시킬 수 있는 고유한 권리이며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러나 우리 회사는 주식지분이 고도로 분산된 관계로 금번 주주총회에 성원확보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주주(증권회사 계좌를 통하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님께 아래와 같이 의결권 행사방법을 안내 드리오니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결권행사의 일반적 유형

- <직접행사> 주주 본인이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여 행사함
- <대리행사> 주주의 가족 등 제3의 대리인을 통하여 대리 행사

□ 한국예탁결제원의 의결권행사

실질주주께서 아래의 “의사표시 통지서”에 의해 예탁결제원에 그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주식에 대해서 우리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4조제5항에 따라 예탁결제원이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요청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예탁결제원은 우리 회사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게 되는 데, 예탁결제원의 의결권행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탁결제원을 제외한 참석주주의 찬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Shadow Voting)하게 됩니다.

□ 의사표시 통지서 송부에 관한 부탁말씀

실질주주께서는 예탁결제원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를 산정(하단 양식으로 보내주시는 의사표시 수량은 제외함)할 수 있도록 아래의 ‘의사표시 통지서’를 작성·송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사표시 통지서를 송부한 주주의 주식에 대해서는 예탁결제원이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 다만 실질주주가 ‘의사표시 통지서’를 반드시 송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의사표시 통지서’ 송부 여부에 관계없이 실질주주는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송부처> 150-948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6 한국예탁결제원 ‘실질주주 의사표시담당자 앞’
팩시밀리 : (02)-3774-3244~5

<송부시한> 2014년 12월 18일(※주주총회 5일 전)

의사표시 통지서

한국예탁결제원 귀중

본인은 2014년 3월 21일 개최하는 하이켈주식회사의 제16기 정기주주총회에 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본인 소유주식의 의결권행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의사표시를 합니다.

실질주주번호		의 사 표 시		
주민등록번호		직접행사	대리행사	불행사
의결권주식수				

년 월 일

실질주주 성명
주소

(인 또는 서명)